

아파트 옥상 철구조물 도장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

『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』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『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』에 따라 DMC자이1단지아파트 옥상 철구조물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내용 : 옥상 철구조물 도장공사

나. 단지개요

(1) 단 지 명 : DMC자이1단지 아파트

(2) 소 재 지 :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

(3) 단지규모 : 3개동 209세대

(4) 관리면적 : 32,207.31㎡

다. 공사범위

(1) 옥상 철구조물 도장공사(3개동)

(2) 공사범위 및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자료 및 시방서 참조.

2. 현장설명회

가. 현장설명 일시 : 2026년 10월 15 일(목요일) 14시

나. 현장설명 장소 : DMC자이1단지아파트 6층 연회장(회의실)

다.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등 지참(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)

라. 면적 및 물량은 사업자가 현장실측을 통해 산출해야 하며, 물량 착오의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.

마. 응찰자는 입찰공고, 현장설명회, 현장 및 제반 상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.

3.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/ 최저낙찰제 / 전자입찰(www.k-apt.go.kr)

가.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 제7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선정.

나.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.

4. 제출서류 및 방법

가. 제출서류

(1)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.

(2) 입찰보증증권,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영수증(5%이상) 중 1부.

(3) 해당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각 1부.

(4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

(5)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 부.

(6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
(7) 5년간 실적증명서 1부.

(8) 입찰관련 공정위 과징금 처분 범위반 사실 확인서 1부.

나. 제출방법 :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, 위 제출서류는 (www.k-apt.go.kr)에 서류를 등록한다.

다. 입찰서제출 마감시한 : 2026.10.22. 17시

5. 개찰의 일시 및 장소

가. 일 시 : 2026년 10월 23 일(금 요일) 13시 이후(당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나. 장 소 : 당 단지 입찰 담당자 PC

6. 입찰 참가자격

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」제26조(참가자격의제한)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

나. 전문건설업(도장·습식방수·석공사업) 면허보유업체

다. 공고일 현재 자본금 : 5억 이상인 사업자

라.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실적5건 이상 업체

마.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

7.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

가.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6조 및 별표3(입찰의 무효)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.

나.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·문자·팩스·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.

8. 입찰 관련 유의사항

가.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,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의 별표 3 “입찰의 무효”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.

9.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

가.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9조(계약체결)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, 31조(입찰보증금 등)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당 단지로 귀속된다.

나.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(계약보증금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·현금 중 택1)으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.

다. 기타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(입찰보증금 등)에 따른다.

10.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

가. 하자보증기간은 2년,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%를 현금 또는 보증서, 공제증권 등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1.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(☎ 02-309-9252) 문의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7 일

DMC자이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(직인생략)